

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 (진장동)

안전서비스2팀 대리 조규창 / ☎ 052-219-5482 / FAX 052-219-5374 / E-mail : kcjo@kdgas.co.kr

문 서 번 호 : 안전서비스2팀-09822

시 행 일 : 2019.11.18

경 유 :

수 신 : 관리사무소

참 조 :

제 목 : 가스계량기 유효만기 도래에 따른 교체 안내



1. 귀 APT 입주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
2. "계량에 관한 법률 제 24조" 및 "동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 13(유효만기 5년)"에 의거 하여 귀 APT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**2020년 2월** 유효만기가 도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3. 귀 APT는 특수 계량기에 해당되는 원격검침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검정 유효기간 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3,5항에 의거 리드 스위치가 부착된 계량기로 당사가 교체하며 특수한 계량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원격시스템 지침조 정 등 부대작업은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.

4. 또한, "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7] 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1.가.1)가)⑥ "『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. 다만,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』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**2013년 7월 25일 이후**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원격검침 또는 실외 검침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
5.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시스템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작업 일 정을 **2020년 1월 13일**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정에 맞춰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을 시행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.

첨 부 : 1. 계량에 관한 법률 내용 발췌 1부
- 법률 제 24조, 시행령 제 21조, 시행령 별표 13
2.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3조 사본
3.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부. 끝.

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

대표이사 송재호



[수신처]: 마제스타워2차, 유니스트 A,B,C동, 삼환나우빌 1,2차